

[붙임 4] 관계법령 발췌문

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7조(도시농업위원회)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3.23.>

1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 2.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
 3.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
 4.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5.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1.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2.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6조(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